##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1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박정하・박준태・김상훈

박성민 • 이인선 • 김용태

김승수 • 박수민 • 신동욱

조은희 · 이종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 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 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 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 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 조·제15조·제49조).

#### 법률 제 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건축사법」"을"「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으로한다.

제15조제3호 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을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또는 「기술사법」 제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을 받은 경우"를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기술사법」 제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경분야 국가유산실측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 년까지는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한)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	<u>&lt;삭 제&gt;</u>
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	
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	
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
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	
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u>&lt;추</u>
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	<u>단 삭제&gt;</u>
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	
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 1. 2. (생략)
-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 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 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5. (생략)

-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 1. · 2. (생략)
  - 3. <u>「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u>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건나(그 집행이 끝난건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현행과 같음)
3. <u>「건축사법」 및 「기술사</u>
<u> </u>
4.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 격사유)
4/作用)
· 1.·2. (현행과 같음)
3. 「건축사법」 및 「기술사
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del></del> 해당한다)

- 4. 5. (생략)
-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 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7. · 8. (생 략)

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 산실측설계업자가 <u>「건축사</u>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 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 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 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 략)

- 4. 5. (현행과 같음)
-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 력상실 또는 「기술사법」 제 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 소의 등록취소 -----

7. · 8. (현행과 같음)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 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 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 은 경우 또는 「기술사법」 제 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 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

③ • ④ (현행과 같음)